

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(국토교통부고시
제2021-984호) 기한 연장(안)

2023. 5.

국 토 교 통 부
(건설산업과)

1. 개정이유

- “수급조절은 규제에 해당하여 규제심사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”라는 관계기관 지적에 따라, 규제심사 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고시한 「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」의 기한을 5개월 연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」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984호의 시행기간 종료일을 연장(5개월, ‘23.7.31.→’23.12.31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「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」 일부개정(안)

가.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

-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」 [별표1]의 제6호 덤프트럭, 제14호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제15호 콘크리트펌프
-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3조제2항제4의2호 3톤 미만의 타워 크레인(2020. 7. 31 이전에 신고된 형식에 한정)

나. 시행일 : 2021. 8. 1

다. 수급조절 기간 : 2021. 8. 1~2023.12.31.

라. 수급조절방법

-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 및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:
대여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(금지)
- 다만, 멸실, 수출, 도난,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
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용

< 신·구조문 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(금지)합니다.	----- ----- ----- -----
가.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○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」 [별표]의 제6호 덤프트럭, 제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제15호 콘크리트펌프 ○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3조제2항제4의2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(2020. 7. 31 이전에 신고된 형식에 한정)	가. (현행과 같음) ○ ----- ----- ----- ○ ----- ----- ----- -----
나. 시행일 : 2021. 8. 1	나. (현행과 같음)
다. 수급조절 기간 : 시행일로부터 2년간(2021.8.1~2023.7.31)	다. 수급조절 기간 : 시행일로부터 2년5개월간(2021.8.1.~2023.12.31)
라. 수급조절방법 ○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 및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: 대여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(금지) - 다만, 멸실, 수출, 도난,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용	라. (현행과 같음) ○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